

시험·연구용 LMO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송인자^{1*}, 노영희¹¹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LMO법”)에 따라,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,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(이하 “연구시설”)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,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은 환경위해성과 인체위해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환경위해성) 또는 보건복지부(인체위해성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신고 또는 허가받은 연구시설은 그 종류 및 안전관리등급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수출입 등 관리·운영(4종)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또한, 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며,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해야 한다.

시험·연구용 LMO를 이용하여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발·실험 승인을 신청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에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. LMO법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 미 이행 시에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이를 숙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.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, 관련 내용은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>)에서 확인 할 수 있다.

[참고문헌]

[1]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(법률 제15181호)

*주저자: Tel. 043-240-6432, E-mail. injasong@kribb.re.kr